

특별시방서

□ 총 칙

○ 적용대상

1. 본 시방서는 2015년 관내1구역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연간단가)에 적용한다.

□ 시 공

○ 시공조건

1. 본 공사는 원 지반을 기준으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2. 별도 도면에 표시된 도로 종, 횡단 구매 및 하수도 구매는 설계도에 의한다.

○ 운 반

자재 운반을 덤프트럭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자재의 원형을 손상치 않도록 주의하되 만약 손상된 자재는 수급자 부담으로 교체 시공한다.

○ 잔 토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콘크리트, 아스콘, 페브릭 등 파쇄물)은 현장에서 재활용업체로 반출하거나 또는 발주청에서 지정한 장소로 반출하여 임시 적치후 재생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 처리업체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음·진동

1. 소음·진동 규제법 제25조제1항에 의거 착공10일전 특정공사 사전 신고서를 환경과에 신고한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로 인한 각종 소음·진동 및 분진 등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전관리요원 및 청소요원을 고정배치 하는 등 주민들에게 미치는 공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추진중인 “소음없는 성북” 만들기 추진계획에 따라 공사 착공 전 소음 저감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포장

1. 노면시공

양질의 포장노면을 위하여 콘크리트 포설 후 광목으로 마감 다림질하고, 경사 부분은 거친 노면을 위해 와이어 또는 마감 끈으로 흔적을 낸다.

2. 노면양생

레미콘 타설 1시간 후부터 가마니 또는 비닐로 양생하고 일정시간 후 흡족히 물을 주며 양생한다.

○ 보도브릭

1. 포장 기술자의 자격

보도포장 품질관리자 1인(품질관리자가 없는 현장은 현장 참여기술자중 1인) 및 포장 기능공 전원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시행하는 보도포장 전문기술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착공시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공사 시행시 이수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2. 포설준비

각종도로 구조물면이 보도브릭 포설면과 조화가 되도록 높이를 정확히하여 정비하고 노면의 배수가 용이하도록 L형 측구 방향으로 1~1.5% 구배유지.

3. 보도브릭 포설

가) 도로와의 접속부분, 진입부분의 나팔구는 차도 포장면과 보도면의 높이 차를 2cm 이하로 시공하여 장애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나) 보차도 경계석(브릭)과 도로경계석(브릭) 침단에 맞추어 실을 띄어 실을 기준으로 줄눈 및 기준면을 평탄하게 시공한다.

다) 각종 구조물과 접하는 부분으로서 4각 또는 3각 브릭으로 보충하고 곡선부분 등 부득이한 곳은 콘크리트로 충전한다.

라) 차도측부터 순차로 포설하되 잔여부분도 4각 또는 3각으로 보충하고 부득이한 곳은 콘크리트로 잘 마무리한다.

○ 경계브럭

브럭과 브럭사이 줄눈은 1cm이하로 시공하고 몰탈로 잘 충전하며 브럭 위치는 지적선을 따라 시공한다.

○ 구조물공사

1. 동바리는 설치 하기전에 지반을 단단하게 고른 후에 설치하여 콘크리트 타설시 침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지반이 연약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기온이 4°C이하일 경우 원칙적으로 콘크리트를 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에 따라 필요한 보온 조치를 취하고 시행 한다.
3. 사전에 거푸집 철근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득한후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현장에 입고된 레미콘에 대하여는 사용시까지 가수등 일체의 원상태 변형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 전량 폐기처분하고 그 손해는 수급자 책임으로 한다.
5. 거푸집은 모르타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중량과 작업하중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히 하여야 한다.
6. 거푸집은 콘크리트면의 미려한 시공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설계내역에 적용한 사용회수에 관계없이 재사용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사용한다.
7. 거푸집의 제거시기는 구조물의 특성·위치 등을 고려하여 감독과 협의 결정한다.
8.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내부를 청소한 후 거푸집 및 철근의 검측을 받아야 한다.
9. 옹벽 수축이음은 9m 이내에 설치하고 신축이음 콘크리트가 서로 물리게 30m 이내에 설치하되 신축이음은 완전히 철근을 절단한다.
10. 콘크리트 타설은 타설일시·방법·인원 및 진동의 규격·대수 등을 보고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시공 이음부분은 각 구조물의 특성에 맞추어 미려한 외관을 지니도록 한다.

○ 토 공

1. 성토용 재료는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토공의 최종 마무리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에 일치하도록 하며 계획고에 5cm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 안전관리

1. 주민 통행안전

공사 시공중 수급자는 안전조치를 취하고 보호책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민통행 불편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공사장 교통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및 관리요령에 의거 충분히 설치해야하며 공사 중 제 사고·제 민원은 수급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어야 한다.

○ 검 사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하수도부설·포장두께·측구 등은 감독 입회하에 시공하고 촬영을 잘해서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전,중,후 사진 4부, 자재수불현황 등 제반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준공 검사원에 확인을 받는다.

○ 하수도부설

1. 하수관거 부설 참가자의 자격

하수관거 정비공사 품질관리자(품질관리자가 없는 경우 현장 참여기술자중 1인) 및 기능공(하수관거 부설 배관공) 전원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시행하는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공 전문기술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착공시 이수증 사본을 제출하고 공사시행시 이수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단, 교육기관 일정 등으로 착공전 교육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교육이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착공 후 4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흙관부설

맨홀과 맨홀사이의 직선으로 부설하여 굴곡이 없어야 하고 깊이는 설계도서에 의하되 설계도서에 명기치 않을 때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시공 한다.

3. 맨홀의 뚜껑설치

뚜껑설치를 위해 맨홀 슬라브에서 정교하게 54~60cm의 구멍을 설치한다.

4. 특수맨홀시공

본 공사중 유속을 감속시키기 위한 감속 맨홀 홀의 인입관은 맨홀 슬라브에서 40cm 토출관은 기초 슬라브에서 30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원형맨홀도 이에 준한다.

5. 공사준공 표지판 설치

공사실명제 실시방안에 따라 하수관 및 맨홀에 별첨과 같이 공사준공표지판을 설치하고 주요공정 시공 후 감독관이 입회한 검측 확인은 현장사진을 촬영하여 준공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6. 맨홀뚜껑 및 받침은 서울시 마크가 표시된 제품으로 구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7. 맨홀에는 반드시 인버트를 설치한다.